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『급여하나 월복리 적금』 특약
-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 신규 조문 대비표 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 고
제1조~제8조 <생 략>		제1조~제8조 <좌 동>		급여 인정 기준 확대
제9조 우대금리		제9조 우대금리		
①<생 략>		①<좌 동>		
우대항목	내용	우대항목	내용	
급여하나우대 (연0.9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 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(주) 보유한 경우(월 1회 <u>이체</u>)	급여하나우대 (연0.9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 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(주) 보유한 경우(월 1회 <u>인정</u>)	
온라인.재예 치 우대(최대 연 0.1%)	<생 략>	온라인.재예 치 우대(최대 연 0.1%)	<좌 동>	
<u>㉸ 급여입금 인정기준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 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, 사 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(급여성 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 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 등)</u>		<u>㉸ 급여 인정 기준 :</u> <u>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 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<u>② 회사에 의한 ‘급여코드’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③ 손님이 ‘급여일’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 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 성 적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		
②<생 략>		②<좌 동>		

제10조~제12조 <생 략> 부칙 <생 략> <신 설>	제10조~제12조 <좌 동> 부칙 <좌 동> <u>8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</u> <u>07월 01일부터 개정시행합니다.</u>	부칙 추가
--	---	--------------